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이봉준의원 외 17명

나. 의안번호 : 제2148호

다. 발의일자 : 2024. 10.15

라. 회부일자 : 2024. 10.18

2. 제 안 사 유

- 최근 지하철, 도로, 하수도 등 굴착공사로 인해 상수도관 누수사고와 시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따르면 수도시설이 손괴되었을 경우, 실제 발생한 공사비(직접공사비)에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따라서, 사고 복구를 위한 공사비 이외에 자산가치 훼손, 시설복구 경비 등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안정적인 수도시설 관리와 시민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원인자부담금 원상복구비를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로 구분함
(안 제2조, 안 제3조).

나. 수도시설 잔존가치 환산한 '간접복구비' 적용한 산정기준 마련함(안 제4조).

4. 참 고 사 항

가. 관련 법령 : 「수도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인자 공사 등으로 인해 수도시설을 손괴했을 경우 부과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수도시설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간접 복구비’를 추가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수도법」 제71조는 수도시설 공사 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비용을 부과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는 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징수방법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 ② ~ ⑤ (생략)

-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하철, 도로, 하수도 등 굴착 공사로 인해 이미 설치된 상수도 시설이 손괴되었을 경우 시설 복구시 실제 발생하는 직접복구비 이외에 주변 관로 영향 및 추가적인 유지·관리 비용, 단수 등에 따른 병물 아리수 지원 비용, 직원 시간외수당 등 부가적인 비용(간접복구비)이 발생하고 있으나, 원인자에게는 현행 조례에 따라 실제 발생한 직접복구비(공사비용)만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원인자 누수 발생 현황>

구 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건)		40,237	8,632	8,636	7,790	7,829	7,350
원인자	건수(건)	1,278	326	277	267	217	191
	비율(%)	3.2	3.8	3.2	3.4	2.8	2.6

<2023년 공사장별 원인자 누수 발생 현황>

(단위: 건)

년도	계	도시 기반시설본부 등		자치구	도시가스	재개발	일반
		지하철	도로 등	하수도 등	통신·전기	재건축	건축 등
2023	191	8	6	31	8	37	101

- 안 제3조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손괴 전 수도시설의 잔존가치 등을 포함한 간접복구비를 추가로 명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수도시설 관리를 가능케 하는 등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또한, 안 제4조의 간접복구비 산정기준에 관해서는 향후 상수도 GIS가 연계된다면 표준화¹⁾된 부과기준 설정으로 적절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1) 상수도 GIS를 통한 누수지점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시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밸브조절 비용 등 기타경비에 대한 통일된 부과기준 자동 산출 구현